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광주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고단38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고단38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협박

피고인 A

검사 조재철(기소), 고병무(공판)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4.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5. 13. 01:56경 인천 서구 B빌라 1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가명)에게 "오빠꺼 개섯어, 너 사진 봤는 대"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C으로 전송한 뒤,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자 "나너조아. 친한동생이라도 지내자 비밀로 누나한테 하구. 응? 씹으면 니 번호 뿌릴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속기사 E의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 가명 D 진술내용)
- 1. D(가명)의 고소장
- 1. 수사보고(C 갭쳐사진 첨부), C 메신저 캡쳐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 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고, 마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성인혜